##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94 발의연월일: 2025. 4. 14.

발 의 자:허성무·김동아·김문수

이강일 • 이재관 • 윤준병

서미화 · 노종면 · 권향엽

정일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석유관리원(이하 "관리원"이라 함)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, 품질검사·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·점검·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있음.

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유통·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 정되어 있어,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 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

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5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1항 중 "유통과 품질관리사업"을 "유통·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"석유제품"을 "석유"로, "유통·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"를 "유통·품 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의2(한국석유관리원의 설	제25조의2(한국석유관리원의 설		
립)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	립) ①		
의 <u>유통과 품질관리사업</u> 을 효	<u>유통·품질관리사업과 탄소</u>		
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	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		
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			
한다.			
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	②		
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11. 그 밖에 <u>석유제품</u> 및 석유	11 <u>석유</u>		
대체연료의 <u>유통·품질관리</u>	<u>유통·품질관리사업과</u>		
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	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		
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	<u> </u>		
는 사업	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